



얼라이언스번스틴

소규모펀드 수시공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“자본시장법”) 제 8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 제 3 항 제 4 호 및 제 5 호에 따른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 아 래 -

1.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입니다.
2. 자본시장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[소규모펀드 여부 공시]

운용펀드	투자자펀드	협회표준코드 (투자자펀드)	발생일자	비율산정 대상구분*
AB 퀄리티 고수의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	AB 퀄리티 고수의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 종류 A	KR5370A96091	2020-11-25	산정비대상
AB 퀄리티 고수의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	AB 퀄리티 고수의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 종류 C	KR5370A96109	2020-11-25	산정비대상
AB 퀄리티 고수의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	AB 퀄리티 고수의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 종류 Cw	KR5370A96117	2020-11-25	산정비대상
AB 퀄리티 고수의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	AB 퀄리티 고수의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 종류 Ae	KR5370AP1045	2020-11-25	산정비대상
AB 퀄리티 고수의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	AB 퀄리티 고수의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 종류 Ce	KR5370AQ0053	2020-11-25	산정비대상
AB 퀄리티 고수의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	AB 퀄리티 고수의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 종류 s	KR5370AQ0061	2020-11-25	산정비대상

*상기 펀드들은 「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」 제 4 조 제 2 항에 따른 비율산정 비대상 펀드입니다. 이에, 협회 공시시스템상 소규모펀드 비율공시 정보와 불가피하게 불일치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.

[소규모펀드 비율 공시]

공모추가형 펀드 수 (운용기준)					소규모 펀드 수 (운용기준)					소규모 펀드 비율(%)
전체	모범규준 제 4 조제 3 항 제 1 호펀드	모범규준 제 4 조제 3 항 제 1 호펀드	모범규준 제 4 조제 3 항 제 1 호펀드	차감계	전체	모범규준 제 4 조제 3 항 제 1 호펀드	모범규준 제 4 조제 3 항 제 1 호펀드	모범규준 제 4 조제 3 항 제 1 호펀드	차감계	
11	0	0	0	11	0	0	0	0	0	0